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3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성범 · 주철현 · 박정현
이춘석 · 문대림 · 이학영
한민수 · 윤준병 · 허영
이건태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7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 ----- <u>2030년</u> ----- -----. ----- ----- ----- -----.

2030년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_____

_____ 2030년

_____.

② _____

 _____ 2030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년-----.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2030년-----

-----.

-----.

② -----

-----2030년-----

-----.

-----.

③ -----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생략)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
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 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
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2030년

1. ~ 3.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2030년

_____.

③ -----

-----2030년-----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
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

-----2030년-----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④ (생략)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 -----<u>2030년</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2030년</u>-----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5. (생략)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2030년

1. ~ 5. (현행과 같음)

③

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
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
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생 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
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
·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
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
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30년-----

-----.

-----203
0년-----.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 ⑤ (생략)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

2030년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

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략)

제15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3. (생략)

- 2030년 -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

--2030년--
--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
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사업법인과 의 합병에 따라 양
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
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2030년-----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2030년

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
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
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
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
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
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
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

1. ~ 3. (생략)

③ ~ ⑩ (생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

② -----

-----2030년-----

-----2030년-----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7년</u>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u>2030년</u>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